



미즈노 CSR 조달행동규범

미즈노에서는 직장에서의 인권존중의 취지로 종업원과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노동환경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보상, 노동조합 선택권 및 단체교섭권, 기타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여 당사가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들의 모든 노동 관련 법규를 따르고, 세계 인권 선언을 포함한 노동 관련 선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존엄과 공정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배경과 사상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즈노는 위와 같은 정책 하에 당사의 CSR 조달행동규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미즈노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이 CSR 조달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미즈노는 공급자들이 이 기본원칙을 종업원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현지의 언어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원칙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매커니즘이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조직 통치

1) 명 및 기준 준수

법령 및 기준 준수

공급자는 모든 적용 법령,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또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 노동 기준

공급자는 ILO 제29 호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제81 호 공업 및 상업의 노동 감독에 관한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98 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조약, 제122 호 고용 정책에 관한 조약, 제131 호 개발 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조약, 제138 호 취업이 인정되기 위한 최소 연령에 관한 조약, 제159 호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조약, 제182 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관한 조약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2. 인권

1) 노동의 기본적 권리 존중

아동 노동자 금지

공급자는 15세 미만, 혹은 15세 이상이라도 생산 국가의 기준에서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은 연령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강제노동의 금지

공급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억류, 연계, 구속 또는 협박, 위압, 체벌이나 말에 의한 학대 등에 의해 강제되는 노동을 행하지 않는다.

조합과 단체교섭의 자유

공급자는 종업원 자신의 선택에 의한 조합조직, 가입권 및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이 조합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조직화 또는 단체교섭을 위한 대체방안이나 법적 수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공급자는 종업원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얻기 위한 제도를 이행한다.

차별금지

공급자는 종업원과 하청업자를 업무능력에 근거하여 채용 및 평가하고,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장애, 혼인여부, 출생, 조직, 회원, 성적기호, 정치적 견해에 근거한 편견에 의한 위법적 차별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에의 성희롱, 직장에서 업무상의 지위나 인간 관계 등을 이용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 등을 행하지 않는다.

3. 노동관행

1) 고용 및 고용관계

안정고용의 실현

공급자는 사업의 형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또한 무계획적으로 종업원을 고용(단기적, 계절적 노동 등) 하지 않는 등 안정된 고용을 실행한다.

부당한 징벌, 징계의 금지

공급자는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 연령, 장애, 혼인여부, 출생, 조직, 회원, 성적기호,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편견 등에 의한 부당한 징벌, 징계처분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징벌의 규정을 정하지 않거나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

2)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적절한 임금, 복리후생의 공급

공급자는 종업원의 기본요구, 적절한 저축, 자유로운 지출이 가능하도록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또는 일반적인 공장임금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법정 또는 법에서 정한 것을 넘는 복리후생비를 제공한다. 또한, 임금의 지불에는 현금이나, 수표 또는 그 등가물로 지급하며, 공제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 등이 지급에 관련된 절차로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노동시간 관리

공급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현지의 노동시간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시간외 노동에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한다.

3) 노동의 안전위생

노동환경의 안전위생의 확보

공급자는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환경뿐만 아니라 화장실/세면대, 식당, 기숙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 업무상의 사고나 종업원의 질병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재해발생 시나 종업원의 긴급상황 등 유사 시에의 대비가 되어있다.

4. 환경

1) 오염의 방지

유해물질 배출의 억제 및 폐기물의 삭감

공급자는 사업(생산/연구개발)에서 배출되는 대기, 수역,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및 공장 주변 주민의 주거환경을 오염하는 소음, 악취, 경관의 오염, 진동 등의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삭감해야 한다. 또한 환경관련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

지속 가능한 자원의 소비

공급자는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목재나 물 등 자연자원에 유래하는 원재료를 과잉소비 하지 않고 자연이 회복되는 사이클의 속도에 맞추어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전력/연료 등) 등의 자원을 과잉소비 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소비에 노력한다.

3)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부하가 낮은 제품의 제공

공급자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제품 사용시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가급적 배출시키지 않으며, 과다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 사용 시의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공정한 사업관행

1) 부패 방지

부정/부패 거래의 금지

공급자는 입찰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 뇌물을 공무원에 제공하는 행위, 수주/발주의 기회를 얻기 위해 과도한 접대를 하거나 받는 등, 업무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금전/선물/접대 등의 금품이나 서비스 수수 등의 위법 또는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하청업체나 위탁업체에 대해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사기 행위, 이해상충 등 자사이익이 되도록 우월한 지위를 남용 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

공급자는 독점적인 가격 설정 등 우월한 입장을 이용하여 시장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거나, 사업에 있어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타사와 공모, 담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재산권의 존중

지적재산권 보호

공급자는 저작권, 특허 등의 지적 창조 활동에 의해 부여된 권익인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6. 커뮤니티 참여 및 발전

1)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공급자는 지역사회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인프라 정비, 교육 진흥, 보건 의료 정비, 지역 경제 진흥 등)의 해결 노력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최저 조건은, 향후 단계적으로 미즈노와 그 직접 공급자 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계약조항의 일부로 삽입되게 됩니다. 공급자는 미즈노의 요청에 응하여, 또 미즈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게 됩니다. 미즈노는 미즈노 또는 미즈노가 지정한 대리인(제 3자 포함)이 업무에 관련한 모든 장소를 감사할 권리를 지니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지 못한 공급자는 미즈노와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